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자체가 건조·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 지원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7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가 건조·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 지원근거 마련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가 건조·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 지원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는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를 지정할 수 있고,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항로에 자체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²⁾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국가의 선박 건조비용 지원대상(보조항로 운항 국가 소유 선박)에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경우에도 선박건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노후선박 교체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항 중인 항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해운법」 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남 신안군에서 4개 항로, 6척 운영 등

【 섬 주민 이동권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현황	비 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여객선·도선 등이 미기향하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항로 운영 시 항로운영비용의 일부 지원	2024년 현재 14개 도서 지원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국고여객선 건조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건조 후 항로에 투입	국가보조항로 2개 항로에 국고여객선 28척 취항	직접수행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민간 선사의 운항결손액을 지원	총 101개 항로 중 29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여 운영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준공영제 확대지원)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운항이 필요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024년 기준 1일 생활권 항로 3개, 연속 적자 항로 9개 등 총 12개 항로 지원	민간경상보조 (국비 50%~70%)

※ 해양수산부

□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박까지 지원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정부 부처(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9